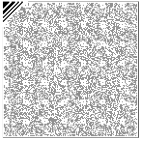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통보

1. 관련: 인증관리팀-2941호(2017.9.8.),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3257호(2017.10.17.) 및 인증관리팀-4048호(12.1.)
2. 우리 원에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6.9.12.)에 따라 '17.1.1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받아 해당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유기농업자재 광고 관련 기준이 신설('17.6.3.)되어 이에 대한 한국친환경 농자재협회의 상기 광고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 요청이 있음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광고기준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통보하니,
4. 공시기관에서는 상기 가이드라인을 공시사업자에게 안내·지도하여 주시고, 한국친환경 농자재협회에서는 상기 가이드라인 기준 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유기농업자재가 적법하게 광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1부. 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수신자 농관을(-1), 병

주무관 **강석현** 행정사무관 **강석인** 인증관리팀장 **안재복** 전결 2017. 12. 11.

협조자

시행 인증관리팀-4150 (2017. 12. 11.) 접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울곡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www.naqs.go.kr>

전화번호 054-429-4185 팩스번호 054-429-4186 / [as14him@korea.kr](mailto:as14him@korea.kr) / 대국민 공개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 1. 개요

### □ 목적

- 유기농업자재의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 그간 배경

-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중 공시제품\*이지만 홈페이지 등에 효능·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광고하여 품질인증품\*\* (‘17.6.3.이전)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았음

\* 허용물질을 원료·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효과·성분함량 미보증

\*\* 공시제품 중 효과·성분함량을 보증하는 제품으로 법 개정(‘17.6.3.)에 따라 폐지

- ‘17.6.3.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유기농업자재 광고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제한된 광고사항 불만 발생
- 공시제품 효능·효과 표시를 위한 시험성적서 발급 고비용\* 부담
  - \* 작물 병해충 시험 건당 400~500만원 소요
- 언론사 광고중인 공시사업자 광고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17.7.)

### □ 광고기준(친환경농어업법 · 농관원고시)

- 법 시행규칙 별표 13(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

#### 7. 포장지 표시사항 및 광고에 관한 자료

##### 나. 광고기준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만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한다.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별표 1(2. 효과·효능 표시 기준)

#### 사. 포장지 표시사항 및 광고에 관한 자료

##### 2) 광고기준

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과 별표2의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만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한다.

## 2. 유기농업자재 광고 사항 정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용어 정의

#### ○ 표시

- 사업자가 상품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 포함), 사업자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 광고

-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상기 표시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팸플릿·견본 및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과 상기 매체·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또는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행위

### 3. 유기농업자재 광고 표시 사항

#### < 기본 원칙 >

- 유기농업자재 표시·광고 시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용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하되, 허용원료의 일반적 특성으로 제한

#### ① 광고 표시 가능한 경우

- (일반원칙) 유기농업자재 원료인 허용물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특성을 광고하는 경우로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한 출처를 밝히는 경우

- 공공기관 연구과제 보고서, 논문(KSCI 한국과학학술지인용색인 이상), 특허등록, 대학교재 등에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명확한 경우로 반드시 해당 출처를 명시하되 해당 제품의 원료(허용물질) 함량(%)을 표시

- ※ 문헌 인용시 문헌명, 작성(발표) 연월일 등 가능한 세부적인 근거 명시  
(예시) 유기농업자재 00제품의 원료인 00허용물질은 00(논문번호, 특허등록번호, 공공기관 00연구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00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00제품의 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0(문헌명)은 00.0.0.에 작성(발표)된 것입니다.

- (세부예시) 아래의 허용물질 효과에 대한 광고 예시는 일반원칙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세포분열, 생장촉진, 비대 등에 대하여
  - 00 허용물질 효과로 세포분열이 좋아집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의 생장을 좋게 합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신초 생장이 좋아집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과실의 비대를 좋게 합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구근의 비대를 좋게 합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뿌리발육을 좋게 합니다.

○ 착과제, 화아형성 등에 대하여

- 00 허용물질 효과로 꽃눈분화를 좋게 합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착과를 좋게 합니다.

○ 발근, 착색, 숙기 등에 대하여

- 00 허용물질 효과로 뿌리내림이 좋아집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발근력이 좋아집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색깔이 좋아지고 품질을 향상됩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숙기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 당도, 품질, 도복 등에 대하여

- 00 허용물질 효과로 당도가 향상됩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품질이 향상됩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도복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 00 허용물질 효과로 질소과다 등에 의한 웃자람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 식물 병해충 등에 대하여

- 00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내병(충)성을 좋게 합니다.

○ 상기 예시와 유사한 문구

□ 광고시 표시 활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업자가 자율적 결정

② 광고 표시 불가능한 경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시제품(효능·효과 미표시)이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제품(농약, 비료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범위

○ 제품명칭 및 효과에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예시) 00농약,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지베렐린 등과 같이 농약명칭을 직접 표기하는 행위

○ 세포분열, 생장, 성장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예시) 세포분열제, 생장촉진제, 성장약, 특수한 성장효과, 세포분열 전문, 우수한 전문세포 분열용, 생장효과 탁월, 우수하고 탁월한 성장효과, 세포분열촉진, 생장촉진, 신초생장, 신장억제, 생장억제 등 문구

○ 과실비대, 뿌리비대, 구근비대, 비대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예시) 비대제, 과실비대제, 구근비대약, 비대용, 구근전문 비대용, 비대효과가 우수하고 탁월함, 우수한 과실비대 전용, 과실비대 촉진, 과실비대 증진 효과, 구근비대 향상시킴, 과실비대, 과실비대 증진, 과실비대 향상 등 문구

○ 착과, 수정, 화아형성, 화아분화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예시) 착과제, 수정액, 화아형성약, 전문착과용, 특수 수정 전용, 화아형성효과가 우수하고 탁월함, 특수 화아분화용, 착과촉진, 수정촉진, 화아형성 촉진, 화아분아를 앞당김, 착과증진 효과, 화아형성 효과, 화아분화 촉진, 수정·착과증진, 적엽제, 적과제, 적화제, 적엽효과, 적과효과, 적화효과, 적엽, 적화, 적과, 맹아억제, 낙엽촉진, 낙엽방지, 수정, 화아형성, 화아분화 등 문구

○ 발근, 발아, 출아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예시) 발근용, 전문 발근용, 발근효과가 우수하고 탁월함, 발근촉진제, 발근증진제, 발아촉진제, 착과제, 수정액, 화아형성약, 발근촉진, 발아촉진, 출아를 앞당김, 발근증진, 발아증진, 출아증진, 출아촉진 등 문구

○ 착색, 색발현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예시) 착색제, 착색약, 착색증진, 착색촉진 등 문구

○ 숙기촉진, 숙기 앞당김, 조기수확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예시) 숙기촉진제, 숙기촉진약, 숙기촉진용, 전문 숙기촉진용, 특수 숙기촉진전용, 수확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탁월, 숙기촉진, 숙기향상, 숙기효과 등 문구

- 당도증가, 당도증진, 풍미향상, 식미개선, 산미감소, 품질향상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예시) 당도증진제, 풍미향상약, 품질향상제, 전문적 풍미향상용, 당도 효과가 우수하고 탁월함, 특수 당도 증진용 등 문구

- 도복경감, 도장억제, 옷자람 방지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예시) 도복경감제, 도장억제제, 옷자람 방지제, 전문 도복경감 효과, 도장억제효과가 우수하고 탁월함, 옷자람 방지전용, 확실한 옷자람 방지 효과 등 문구

- 기타 오인하기 쉬운 문구 : 생장조정물질 등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

(예시) 지베렐린 전구물질인 00함유, 옥신을 다량 함유한 00가 있음, 달용이, 민달팽이 등 보증성분 외의 성분(물질)에 의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 문구

##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유기농업자재 공시정보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관련 근거없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료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
- 실제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광고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
- 사용된 원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
- 부된 원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
- 효능·효과가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제품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효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효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유기농업자재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효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효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표시·광고된 제품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련된 제품의 광고에서 특정인의 체험기를 인용하여 객관적으로 제품의 효능이 검증된 것처럼 표시·광고
- 공인된 기관의 실험이나 객관적인 조사결과 없이 자사의 제품이 특정 병해충 등에 효능이 좋다고 표시·광고 등

□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는 것

-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 사용 표시·광고(단,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객관성 있는 자료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가능)
- 경쟁사업자 제품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 제품의 일부에 대해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광고 등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자기가 공급하는 제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 제품에 관해 근거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



## 4. 유기농업자재 광고 위반 벌칙 등 규정

### □ 유기농업자재 광고 위반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법 제60조 및 규칙 별표16)

위반사항	형벌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제60조제1항제14호)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칙 별표16) 공시사업자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광고기준 포함)에 맞지 아니한 경우 ⇒ 1차위반: 판매금지, 2차위반: 공시취소

### □ 유기농업자재 광고 위반 벌칙(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사항	형벌기준
(제17조제1호) 제3조제1항(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 □ 유기농업자재 광고 위반 적용 범위(1순위: 친환경농어업법, 2순위: 표시광고법)

- 공시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광고하거나 유기농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경우
-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 ⇒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
- 상기 사항 외 표시광고법 벌칙 광고 위반 행위의 경우
  - ⇒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2.>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